

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4. 8. 30.>

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(제23조의3제2항 관련)

1. 안전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

구분	교육대상		교육시간	교육 방법
가. 신규 종 사자 교육	안전관리책임자		8시간	강의 및 실 습
	궤도운송 종사자	궤도차량의 운전자	8시간	
		이용객 탑승 보조자	4시간	
		안전관리 및 점검·정비자	8시간	
나. 보수 교 육	안전관리책임자		반기마다 4시간 이상	
	궤도운송 종사자	궤도차량의 운전자	반기마다 4시간 이상	
		이용객 탑승 보조자	반기마다 2시간 이상	
		안전관리 및 점검·정비자	반기마다 4시간 이상	

2. 안전교육 내용

구분		교육내용
안전관리책임자		- 궤도운송법령에 관한 사항 - 궤도시설 점검·정비요령에 관한 사항
궤도운송종사자	궤도차량의 운전자	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	안전관리 및 점검·정비자	- 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- 궤도차량의 속도 제한,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- 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
	이용객 탑승 보조자	- 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- 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-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- 이용객의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

※ 비고

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종사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궤도운송종사자로 하여금 신규 종사자 교육을 받은 후 궤도운송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.